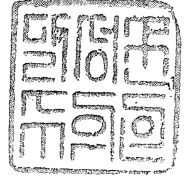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9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0. 6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가 2021. 3. 23. 개정되어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, 실행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(안 제11조)
- 나.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명칭 변경(안 제12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1. 9. 6. ~ 9. 27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운영위원회 설치 등)”을 “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
설치 등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”를
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”로
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실행위원회 설치 등)”을 “(실무위원회 설치 등)”
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실행위원회(이하 “실행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실
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
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“실행위원회”를 각각 “실무위
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운영위원회 설치 등)</p> <p>①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<u>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<u>운영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제12조(실행위원회 설치 등)</p> <p>①<u>운영위원회</u>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<u>실행위원회(이하 “실행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 <p>②<u>실행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실행위원회</u>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</p>	<p>제11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)</p> <p>①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<u>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<u>심의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실무위원회 설치 등)</p> <p>①<u>심의위원회</u>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<u>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 <p>②<u>실무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그 밖에 <u>실무위원회</u>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</p>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23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23.>